

고성군기조례중개정조례 (안)

의안 번호	464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8. 2. 21.

제 출 자 : 고 성 군 수

1. 개정이유

- 그동안 우리군이 사용해 오던 군기를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와 21세기를 맞아 우리지역의 이미지를 독창적으로 표현한 군기를 새롭게 개발, 활용함으로써 군민의 일체감 조성과 애향심 고취로 미래 지향적인 군의 발전역량을 높이는 데 있음

2. 주요골자

- 현재 사용하는 군기는 도안이 복잡하고 군민에게 친밀감이 없어 우리군의 이미지에 맞게 새롭게 도안하여 사용

3. 본 문

고성군조례 제 호

고성군기조례중개정조례 (안)

고성군기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] 제1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고성군기조례중개정조례 (안)

고성군기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제1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.

(별지 제1호)



군기의 해설

전체적인 형상은 고성인의 신명나는 춤사위로 화합과 번영, 미래지향적인 진취적 기상을 나타냄.

- 청색은 한려수도의 푸른바다와 끝없는 수평선을 의미하며,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상징.
- 녹색은 고성군의 평야와 천연의 녹지대를 의미하며, 역동적이고 근면한 군민을 상징.
- 빨간색 타원은 떠오르는 태양을 의미하며, 고성군의 밝은 '미래'와 '비전'을 상징.